

# For 2022 피램의 기출마무리 LEET선별 |주차 해설지

**1주차 [1~3]**

2013LEET [13~15] 인문 '주희의 심통성정론' ☆☆☆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송대 유학자들에게 **심(心)**은 중요한 철학적 문제였다. 남송 시대의 주희는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미발이발(未發已發)**과 **체용(體用)**의 논리를 근거로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제시했다. <미발과 이발은 희로애락(喜怒哀樂)과 같은 **감정이 심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드러내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는 개념이다.** 체용은 본체와 작용으로서, 동일한 사물의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킨다.>

'송대 유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심'에 대한 지문입니다. 그 많은 유학자들 중에서 '주희'라는 사람의 '심통성정론'이 소개되고 있네요. 이 이론의 근거가 되는 논리는 '미발이발'과 '체용'이라고 하니, 이들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체크해야겠습니다. 이 지문의 정보는 '미발이발/체용 → 심통성정론'이라는 도식에 모이게 될 거예요. 이를 놓지 않은 채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미발이발'입니다.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 '심'에서 드러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미발=감정이 심에서 드러나기 전', '이발=감정이 심에서 드러난 후'로 정의하고 읽을 수 있어야겠죠?

다음으로 '체용'입니다. 본'체'와 작'용'을 합쳐 '체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본체', '작용'이라는 말은 어휘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사물의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와 같은 정의가 잘 와닿지는 않네요. '미발이발'과는 달리 완벽하게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이니 하나씩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미발이발/체용 → 심통성정론'이라는 도식만 꼭 잡은 채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주희의 '심통성정론'은 어떤 이론일까요?

**\*새끼 문제 해설\***

Q1. 1문단의 '송대 유학자'들을 정의해보자.

정답 :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사람들  
첫 문장에서 '수식된 정의'로 제시된 정보이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아무 생각없이 읽고 넘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송대 유학자'라는 사람들의 '정의'이기도 하고, '인격 완성/도덕적 실천'이라는 카테고리 제시하는 문장이기도 하기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더욱 강조되는 내용이니, '수식된 정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남송 시대의 주희는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미발이발(未發已發)과 체용(體用)의 논리를 근거로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제시했다.

'미발이발/체용 → 심통성정론'이라는 중요한 도식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수기치인' 지문에서도, '수기치인 → 성인'이라는 도식이 지문 끝까지 사용되는 모습이 있었죠? 인문 지문의 핵심은 재진술이기 때문에, 처음에 도식화할 수 있는 내용은 끝까지 끌고 내려가는 태도를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주희는 일신의 주체자인 심에는 **인식이 성립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미발과 이발의 두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을 이발로만 보던 관점을 극복하고, <지각 작용이 시작하기 이전이 미발 상태이며 그 이후가 이발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감정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심의 본체와 작용으로 각각 성(性)과 정(情)을 규정**하고, 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요 성은 정 의 근거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라는 **심통성정론**을 구축했다.

'주희'의 주장이 계속되는데, 이번엔 '미발이발'을 '감정'이 아닌 '인식 성립'에 주목해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미발이발'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했으니, 이렇게 다시 정의해주는 부분에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 '미발이발'은 이번 문단에선 '지각 작용'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1문단부터 '미발이발'을 나누는 기준, 즉 '정의'가 세 가지가 제시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 세 가지 정의, 즉 '감정 드러남', '인식 성립', '지각 작용 시작'을 결국 '미발/이발'의 구분 기준이라는 같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같은 말'을 찾아가는 과정이 독해의 기본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도, '감정', '인식', '지각 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같은 말로 인지할 수 있는 단어들이네요.

여기에 '주희'는 감정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심의 '본체'와 '작용'으로 각각 '성'과 '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본체'와 '작용'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각각 '체'와 '용'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첫 문단에서 '미발이발'과 '체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체'는 '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용'은 '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며, '성'이 드러나면 '정'이 된다는 것, 즉 '체'가 드러나면 '용'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정보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읽었다면 이 지문은 '심'부터 '미발이발', '체용', '성', '정' 등 그저 많은 용어들이 나열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같은 말'을 찾는다는 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체와 용으로 이루어진 심과 관련하여 '미발'과 '이발'이라는 두 과정이 있다."라는 하나의 흐름을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독해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시한 뒤,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라는 '심통성정론'을 소개하고 있네요.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정보들을 하나로 모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심통성정론'이라는 화제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읽혀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라는 심통성정론을 구축했다.

여기서 '성'과 '정'은 결국 '체'와 '용'이고, '심'은 '미발이발'이라는 두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 등이 떠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정보들을 요약해주는 문장이네요. '심통성정론'이라는 말이 새롭게 느껴지면 안 돼요. 나아가 '심/통/성정/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심이 통괄한다 성과 정을' 정도로 납득하시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겠네요.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것은 심이 성과 정을 겸하고 있다는 것과 심이 성과 정을 각각 주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심은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에서 심은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하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희는 인간이 천리(天理)와 일치하는 순선무악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라는 기(氣)의 요인을 가진 기질지성(氣質之性)을 타고났다고 보았다. 천명지성은 도덕의 근거이지만, 기질지성은 주어진 청탁후박(淸濁厚薄)의 기질적 차이로 이익의 추구나 감각적 욕구에 빠져 드는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된다. 기질지성은 성(性)이라는 면에서는 이(理)의 성격을 지니지만 기질이라는 면에서는 기(氣)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질지성이 천명지성과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희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통성정론’의 정의대로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성’과 ‘정’을 겸한다는 것은 위에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니 그리 어렵지 않는데, ‘주재한다’는 내용은 조금 생소하죠? 우리의 궁금증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주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은 ‘미발’로,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는 ‘이발’로 읽혔으면 좋겠어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너무도 당연하게 말이에요. 이 지문에서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미발이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으니,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발이발’의 단계에서 ‘심’이 각각 ‘성’과 ‘정’을 ‘주재’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성=체’는 ‘미발’ 단계에 대한 것으로, ‘정=용’은 ‘이발’ 단계에 대한 것으로 묶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 어렵지 않죠?

여기서 갑자기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심통성정론’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주희’의 주장을 구체화해주고 있어요. ‘천명지성’은 ‘도덕의 근거’이지만, ‘기질지성’은 ‘악한 감정의 뿌리’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물론 이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나쁜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과 같은 좋은 것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 역시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기치인’ 지문의 ‘기질변화론’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문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다면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한 내용을 쉽게 납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면, 꼭 돌아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새끼 문제 해설\***

**Q2.** 3문단에서 ‘천명지성/기질지성’ 이야기는 왜 나온 것일까? 사실 ‘심통성정론’의 역할 자체와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주희가 ‘심통성정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송대 유학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르면,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은 그 정의들로 미루어봤을 때 결국 ‘인격 완성’ 카테고리에 속하는 정보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미발이발/체용 → 심통성정론’이라는 도식은 사실 ‘인격 완성’과 관련된 것이고,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하게끔 하는 것이 곧 ‘성’과 ‘정’을 주재하는 ‘심’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격 완성’, 최소한 ‘심통성정론’과의 연관성을 생각해주시면서 흐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바로 뒷 문단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정보는 ‘화제로 모일 것이니까요.

심통성정론은 기질지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답하기 위한 주희의 해결책이다. 심은 정이 드러나기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본체이기도 한 성을 어떻게 주재할 것인가? 주희가 이러한 난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경(敬)을 통한 품성의 함양이었다. 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상성성(常惺惺)과 엄숙한 자세인 정제엄숙(整齊嚴肅) 등의 방식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심을 한곳에 잡아두는 것이다. 예법의 준수와 용모의 단정 등과 같은 행위 또한 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에 들어가는 방도로 인정된다. 품성을 함양하는 경의 단계는 심이 미발일 때이며, 이발일 때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단계이다. 격물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에 나아가 하나씩 원리를 궁구해 가는 과정이며, 치지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한 원리가 보편적 원리와 일치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 누적된 지식은 비약적으로 확장하여 만물의 원리를 일관하는 천리와 합일한다. 심의 원리인 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것이 주희가 제시한 성즉리(性即理)의 철학이었다. 이처럼 주희는 미발일 때의 함양과 이발일 때의 격물이라는 수양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수양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화제인 ‘심통성정론’으로 흐름이 돌아옵니다. 이 ‘심통성정론’의 핵심은 ‘기질지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희’의 대답이라고 해요. 여기서 ‘도덕적 감정’은 곧 ‘천명지성’과 같은 말이라는 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앞 문단 마지막 줄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심’이 ‘성’을 주재하는 방법, 즉 ‘천명지성’과 같은 도덕적인 마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희’는 ‘정’을 통한 품성의 함양을 제시합니다. ‘상성성’, ‘정제엄숙’과 같은 어려운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경’이라는 정보의 역할이 결국 ‘품성 함양’을 통해 ‘심’이 ‘성’을 주재하게끔 한다는 큰 틀 속에 저 정보들을 그냥 살짝 넣어주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의 단계는 ‘심’이 ‘미발’일 때의 단계라고 해요! ‘미발’이라는 말 참으로 반갑습니다. 반가움을 느끼며, 동시에 뒷 문단에서 계속 하던 것처럼 ‘정’을 ‘미발’과 같은 카테고리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발’이라는 친숙한 개념은 또 ‘격물치지’라는 개념과 같은 카테고리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 단계에서는 ‘격물’과 ‘치지’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식을 누적해가면 ‘성즉리’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수양’을 해야,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정보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희’의 ‘심통성정론’, 그 중에서도 ‘심’의 역할로 모든 정보가 모이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세세한 내용들은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만, 정보들 사이의 ‘관계’ 정도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둘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미발이발/체용 → 심통성정론’이라는 큰 도식으로 모두 모이고 있잖아요. 그동안 나온 정보들을 정리해볼까요?

미발=성=경=함양 / 이발=정=격물치지  
→ 성즉리=수양론=사회적 실천(도덕적 실천)의 전제

어때요? 사실 다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 묶어서 정보를 정리하면, 그 많은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격언을 잊지 말도록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이처럼 주희는 미발일 때의 함양과 이발일 때의 격물이라는 수양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수양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미발이발/체용 → 심통성정론’이라는 도식을 다시 한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양’, 즉 ‘인격 완성’은 ‘사회적(도덕적) 실천’을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해요. 앞에서 등장한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문장일 뿐 아니라, ‘송대 유학자’들의 경의로 제시한 카테고리들을 또 한 번 활용하는 기막힌 구성이죠? 이런 걸 보면서 희열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실천’의 전제가 ‘수양’이라는 건, ‘수양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을 이야기하던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율곡’과 똑 닮아있죠? 사실상 같은 지문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저 지문은 꼭 다시 풀어보도록 합시다!

주희가 제시한 **격물의 대상**은 조수초목(鳥獸草木)과 윤상 규범(倫常規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였지만, 그 방법은 주로 성현이 이미 원리를 기록해 둔 **경전의 학습**이었다. 주희의 격물론은 도덕의 원리를 탐구하는 지적인 과정이고 **최종의 목표는 인격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미발 단계에 설정해 두었던 **함양 공부**를 이발 단계의 공부에까지 확장하여 수양론을 완성했다. 주희의 철학은 심성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천리에 따르는 인간의 길을 제시했고, 명리(名利)를 좇아가는 세상을 **도덕적 사회로 바꾸고자** 했다.

‘주희’는 이렇게 ‘이발 단계’에서 ‘격물’을 하는 방법으로 ‘경전의 학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미발’ 이후인 ‘이발’의 단계인데, ‘미발’ 단계에서 설정해 두었던 ‘함양 공부’를 ‘이발’ 단계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미발’과 ‘이발’ 모두 ‘인격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단계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도덕적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의 ‘주희’가 제시한 수양론은 이렇게 천리에 따르는 인간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보량이 많아 보였지만, 카테고리 묶으면서 정보량을 확 줄여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1. ㉠에 대한 이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

- 이 지문의 화제입니다. 사실상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일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잘 정리했으니, 겁먹지 말고 덤벼볼까요?

①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희로애락의 본성에서 나온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으로부터 ‘정’이 나온다고 했지. **[해설]**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작용’에 해당하는 ‘정’의 영역이고, 이 본성은 ‘본체’에 해당하는 ‘성’의 영역일 것입니다. ‘정’은 ‘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럼 저 추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과 ‘정’이라는 개념은 ‘감정’을 다루기 위해 제시된 ‘본체’와 ‘작용’에 해당합니다. ‘감정’의 ‘본체’라면 ‘본성’에, ‘감정’의 ‘작용’이라면 ‘감정의 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살짝 선을 넘는 선지이지만, 못할 것도 없는 선지라고 봅니다. ‘성’과 ‘정’이 무엇인지 납득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으니까요.

② **희로애락의 본성은 체이고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용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1번 선지랑 똑같은 내용인데. **[해설]** 1번 선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본성’은 ‘성’에 해당하며, 이는 ‘체’와 같은 말이었죠? 여기에 ‘감정’은 ‘정’에 해당하며, 이는 ‘용’과 같은 말이었으니 맞는 선지네요. 최소한 ‘성=체’, ‘정=용’ 정도의 관계는 정확히 잡았는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③ **기질지성으로부터 나오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순선하지 않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질지성은 나쁜 거였지. **[해설]** ‘기질지성’은 ‘악한 감정의 뿌리’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큰일나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나온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순선하지 않겠죠. ‘순선하다’라는 단어 정도는 어휘의 차원으로 알아둡시다. ‘깨끗하고 순수하다’ 정도예요.

④ **심이 미발일 때 희로애락의 본성은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본성은 ‘천명지성’으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것이었지. **[해설]** ‘심’이 ‘미발’일 때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정’을 행해야 하는 단계예요. 이때의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의 ‘본성’, 즉 ‘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미발’인 상황에서 ‘심’은 ‘성’을 온전하게 유지하게끔 ‘주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심’이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오히려 ‘심’의 작용으로 본래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⑤ **이발 상태의 심은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심은 정을 주재하지. **[해설]** ‘이발’ 단계에서 ‘심’은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한다고 했습니다. ‘정’은 ‘이발’ 단계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정보라는 건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요.

2. 주희의 수양론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㉔

- '주희의 수양론' 역시 이 지문 전체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지문은 '수양론'까지만 다루고, 그 이후의 '도덕적 실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니깐요. 전형적인 내용일치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 ① 행동거지는 마음의 발현이므로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문 내용 고려하면 그렇겠지 뭐.  
**[해설]** 가장 좋은 풀이는 보자마자 당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지문을 지배하고 있는 '주희'의 사상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선지처럼 느껴져야 해요.

정확하게 해결하자면, '경'에 대한 내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곧 '경'의 단계를 의미하므로 '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고, 거기서 예법의 준수나 용모의 단정과 같은 '행위'가 '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행동거지와 같은 '행위'가 곧 '심성'이라는 마음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행위를 하다 보면 그에 영향을 받아 심성이 형성되고, 이 심성에 따라 또 똑같은 행위를 할 것이니까요.

- ② 사회적 실천을 우선시하면서 경을 통해 경전을 학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회적 실천의 전제가 수양론이었지.  
**[해설]** 사회적 실천을 우선시한다는 말을 보자마자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실천'이 '수양'을 전제로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기도 했고, '경' 뿐만 아니라 경전의 학습을 통한 '격물치지' 등 '실천'보다는 '수양'을 강조한 '주희'의 주장을 통해 바로 판단이 가능해요.

- ③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므로 품성의 도야에 힘쓰고자 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품성의 도야 중요하지.  
**[해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곧 '격물'에 해당합니다. '격물'은 '이발'의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발'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 '경'이 바로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품성의 도야'에 해당하니, 맞는 말이 되네요.

- ④ 타고난 마음의 선한 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명지성 유지하는 거 중요하지.  
**[해설]** '타고난 마음의 선한 뿌리'는 '천명지성'을 일컫는 것일 테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성'이 주재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는 '상성성'을 통한 '경'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죠?

- ⑤ 자연 및 사회 현상의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덕 원리의 파악에 이르하고자 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 및 사회 현상의 원리에 대한 탐구? 저런 거 있었나... 아 이게 '격물'의 정의네. 어쨌든 이걸로 '도덕 원리 파악'하는 건 수양론의 기본이니까 당연한 선지네.  
**[해설]** 자연 및 사회 현상의 원리에 대한 탐구, 즉 '격물'을 통

해 궁극적으로 '천리'와 같은 도덕 원리의 파악에 이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잡을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며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윗글에 따른 때, 주희의 문제의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㉔

- 또 다시 화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희가 관심없는 것은 곧 화제와 무관한 내용, 혹은 화제와 반대되는 내용일 거예요.

- ① 경전 학습이 도덕적 인간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전 학습 중요하지.  
**[해설]** '경전 학습'은 '격물'의 구체적인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인격이 완성된 도덕적 인간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② 인간이 악한 행동이나 나쁜 감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질지성 이야기네.  
**[해설]** 보자마자 '기질지성'이 떠올라야겠죠?

- ③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근본적 원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격물치지 이야기네.  
**[해설]** '격물치지'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 ④ 천리와 인도의 위상을 바꾸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체적인 삶 이런 건 화제와 상관이 없었지.  
**[해설]** '천리'와 '인도'의 위상을 바꾸자구요? 수양을 통해 '천리'와 합일된 경지에 이르자고 했지, '인도'와 그 경지를 바꾸자고 한 적은 없죠. 화제와 아예 어긋난 내용입니다.

- ⑤ 이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도덕적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지막 문장에서 '명리'를 본 것 같은데? 오 맞네.  
**[해설]** '주희'의 철학은 '명리'를 좇는 세상을 도덕적 사회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양' 그 자체가 5번 선지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주차 [4~6]**

2020LEET [19~21] 인문 '시간여행' ☆☆☆

세상은 변화를 겪는다.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차원주의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을 **영원주의자**라고 한다. 시간의 흐름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 혹은 표상의 차이를 가져온다. 영원주의자들에게 매 순간은 시간의 퍼즐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처럼 이미 주어져 있다. 영원주의자에게 시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는 앞 또는 뒤라는 관계만이 존재한다. 현재는 과거의 뒤이고 동시에 미래의 앞일 뿐이다. 영원주의 세계에서 한 사람은 각 시간 단계를 가지는데, 그 사람이 없던 수염을 기르면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니다. 외모의 차이는 단지 그 사람의 서로 다른 단계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때문에 세상이 '변화'를 겪는다고 여깁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손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쉽게 납득이 가능한 문장들은 큰 고민없이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4차원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그저 똑같이 존재할 것이라고 해요. 그렇겠죠.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불가능할 테니까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을 '영원주의자'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영원/주의/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저 시간이 '영원'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납득하면서, '영원주의자'는 곧 '4차원주의자'와 같은 말임을 인식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인식하면서 정보량을 줄여주셔야 해요!

영원주의자들에게 매 순간은 '이미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시제도 특별한 의미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는 시제가 아닌 그저 앞뒤라는 '관계'일 뿐이라고 해요.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저 퍼즐 조각처럼 매 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외모 변화 같은 것도 그저 '서로 다른 단계' 사이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수염을 기른 사람을 보면 '시간이 흘러서 수염이 길어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영원주의자들에게는 그냥 '수염 없는 단계'에서 '수염 길어진 단계'로 진행했을 뿐인 거죠.

사실상 같은 말의 향연이기 때문에, 손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4차원주의자, 즉 영원주의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한마디로만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3차원주의자는 시간이 흐른다는 견해를 내세운다.** 시간이 흐른다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는 모두 다른 의미나 표상을 지닌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는 이들 중에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의 바로 현재주의자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지나

간 과거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주어진 **현재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4차원주의자=영원주의자'와는 달리, '3차원주의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시간이 흐른다'라는 견해를 내세우네요. 그렇다면 영원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은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각각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는 말이니깐요.

이러한 '3차원주의자' 가운데,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현재/주의/자'들도 존재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쉽게 살릴 수 있겠죠? '과거'와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주어진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현재'가 갱신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정의일 거예요.

이렇게 '4차원주의자'와 '3차원주의자', 그 중에서도 '현재주의자'를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새끼 문제 해설\***

**Q1.** '4차원주의자', '영원주의자', '3차원주의자', '현재주의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잡아 보자.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4차원주의자'는 '영원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학술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이 지문에서만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똑같이 정의되고 있어요. 이들이 같은 말임을 인식하면 정보량을 줄일 수 있었죠?

한편, '3차원주의자'는 '현재주의자'와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3차원주의자'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들과, '현재주의자'는 그 중에서도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여러 '3차원주의자' 중에 '현재주의자'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개념들의 포함 관계는 뒷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문단에서 개념들의 관계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잡고 가는 태도를 세우도록 합시다.

**시간여행**은 시간에 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이다. 현재주의자에 따르면, 현재에서 과거, 미래의 특정 시점을 찾아가는 것은 영원주의자의 생각처럼 시간 퍼즐의 여러 조각 중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주의자 중에 다수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누군가가 시간여행을 하려면 과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흘러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실재하지 않는다. 이를 **도착지 비존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시간여행'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봅니다. '현재만 존재한다고 보는 현재주의자'의 입장에 따르면, 시간의 특정 시점을 찾아가는 것은 '영원주의자'의 생각처럼 시간 퍼즐의 여러 조각 중 하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만 존재하기에 '과거', '미래'로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셔도 훌륭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주의자’ 중 다수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네요. 자세한 근거를 살펴보니,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현재’라는 출발지와는 달리 ‘과거’, ‘미래’라는 도착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들은 ‘현재’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니, 이런 주장을 납득하는 게 어렵지는 않네요. 결국, 시간여행의 ‘도착지’가 ‘비존재’한다는 ‘도착지/비존재’의 문제 때문에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현재주의자 중에 다수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간여행’이라는 구체적인 화제를 ‘현재주의자’라는 핵심 개념과 붙여 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단 간의 유기성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재주의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당연히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현재주의자 중에도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시작하는 현재 시점  $T_n$ 에서 과거의 특정 시점  $T_{n-1}$ 은 실재가 아니다. 그러나 시간여행자가  $T_{n-1}$ 에 도착할 때 그 시점은 그에게 현재가 되어 존재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과거를 마치 현재인 양 여기게 하는 속임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과거 시점  $T_{n-1}$ 에 도착한다면, 과거는 이제 현재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주의자’ 중에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도착지 비존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문의 흐름을 짚 잡고 있다면, 이런 물음이 자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시작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의 특정 시점은 실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현재’만 존재한다고 보니, ‘과거’라는 시점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여행자가 ‘과거’에 도착하면, 그 ‘과거’는 이제 ‘현재’가 됩니다! 시간여행을 하는 입장에선 여행 전 ‘과거’라고 부르던 시점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되었기에, ‘현재’가 된 것이죠. 이를 속임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도착하면 곧 ‘현재’가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따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현재는 애초에 출발하는 시점인  $T_n$ 이지 과거의 도착지인  $T_{n-1}$ 이 아니다. 만일  $T_{n-1}$ 이 현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T_{n-1}$ 에 도착한 사람에게  $T_n$ 은 이제 미래가 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주의자는 미래의 비존재를 주장하므로,  $T_{n-1}$ 에 도착한 시간여행자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도착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이다. 결국 3차원주의 세계에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여행의 가능성, 즉 이 지문의 ‘화제’를 따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현재’는  $T_n$ 이라는 시점입니다. 즉,  $T_{n-1}$ 이 ‘현재’가 된다고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  $T_{n-1}$ 이 ‘현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면,  $T_n$ 이 ‘미래’가 된다는 것도 중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요할 것입니다. 이는 지문에 적혀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도착한 일이 되므로 ‘출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남게 된다고 합니다.

‘도착지 비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_{n-1}$ 이 ‘현재’가 된다는 신박한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남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결국 3차원주의 세계에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지문의 흐름을 잡게 해 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지만, 최근의 불친절한 서술 경향에 따른다면 이런 문장은 삭제될 확률이 높아요.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문장은 ‘3차원주의 세계’라는 화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의 중심에 세우고 있는 ‘현재주의자’는 ‘3차원주의자’의 일부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는 ‘3차원주의’의 입장에서 ‘시간여행’을 다루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믿는 3차원주의자는 ‘출발지 비존재’를 ‘출발지 미결정’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시간여행자가 과거  $T_{n-1}$ 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실재하지 않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미결정된 미래로부터 현재로 이동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전혀 결정되지 않았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다른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시간여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계속해서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믿는 3차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곧 이 지문의 화제임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이들은 ‘출발지 비존재’를 ‘출발지 미결정’으로 보는 방식으로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역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현재주의자’들에게 고투리를 잡힐 것이 뻔하니, ‘미래’가 ‘미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약간 억지 같죠? 우리의 생각에 동감하는지, 지문에서도 이는 ‘존재하지 않아 결정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비판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여행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러나  $T_{n-1}$ 에 도착하는 사건의 원인이  $T_n$ 에서의 출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T_{n-1}$ 에 도착하는 순간 미래 사건이 되는 시간여행은 도착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미래는 계속 미결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여행 여부에 따라 미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조건부 결정론**자는 출발지 미결정의 문제가 해소되어 시간여행에 걸림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여행이 3차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고수하는 이들은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출발지 미결정의 문제로 대체하여 이를 해소하는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을 던지고 고민하는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의 그날까지 말이죠!

하지만  $T_{n-1}$ 에 도착하는 사건의 '원인'은 누가 뭐라해도  $T_n$ 에서의 출발입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일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T_n$ 에서의 출발은 어쨌든 분명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T_n$ 에서의 출발이 '결정된 사건'일 수 있다는 건데, 지문에서는 이를  $T_{n-1}$ 에 도착하는 순간  $T_n$ 에서의 출발이라는 '원인'은 '결정'이 된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것은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원인이라면 결정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래'는 시간여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도, '미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조건부/결정론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조건부'라는 말에서 이들의 주장을 확 납득할 수 있겠죠?

이들의 말에 따르면 '미래'가 결정되었고, 결국 시간여행의 걸림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도착지 비존재'의 문제를 도착지인  $T_{n-1}$ 이 '현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방식으로 해결했고, 출발지인  $T_n$ 이 시간여행이라는 '조건'에서는 '결정된 미래'의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여행이 3차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고수하는 이들'은 이러한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 좋아 보이는 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새끼 문제로도 물어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만 생각해보고 다음의 해설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새끼 문제 해설\***

**Q2.** 4문단 마지막 문장의 '시간여행이 3차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고수하는 이들은 '조건부 결정론자'의 전략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일단 '시간여행이 3차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고수하는 이들은 '현재주의자 중 다수'(지문의 ㉠)일 것입니다. 이들은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조건부 결정론자'의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주의자'의 주장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왜 반대하는지도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재주의자'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부 결정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미래'가 '시간여행 출발'이라는 특정 조건에서는 존재하게 됩니다. 애초에 4문단 시작에서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믿는 '3차원주의자'의 주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조건부 결정론자'는 사실 '현재주의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었어요. 새끼 문제 1번에서 설명했듯이, '현재주의자'는 '3차원주의자'의 부분집합이니까요.

즉, '조건부 결정론자'들은 '미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논한 것인데, '현재주의자 중 다수'에게 이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주장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납득하는 태도가 잡혀 있다면,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물어

**\*생각 심화\***

이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은 '주장→반박→재반박→재반박→재반박……'의 구조입니다.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가 다시 반박당하고, 또 다시 반박하다가 또 반복당하는 방식이죠. 또한 그 반박들이 '순환론'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주의자'의 관점에 따르면 도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현재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대로  $T_{n-1}$ 을 '현재'로 봤더니, '출발지'가 사라져 다시 한번 '현재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 끝에 등장한 '조건부 결정론' 역시 결국 '현재주의자'의 주장에 어긋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구요.

이는 2017학년도 수능 '지식의 구분'(a.k.a '과인&포퍼') 지문의 3문단에서도 등장했던 비판 방식입니다. 기술분석이 잘 되었다면, 이 지문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전혀 결정되지 않았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다른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시간여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T_{n-1}$ 에 도착하는 사건의 원인이  $T_n$ 에서의 출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T_{n-1}$ 에 도착하는 순간 미래 사건이 되는 시간여행은 도착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은근슬쩍 많은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지문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한 다음 '원인이라면 결정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대우 명제) 수능과 달리 어느 정도의 논리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LEET언어이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흐름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논리학에 대한 지식이 아닌 '문장 간 관계 생각'이라는 기본적인 태도로 잡아낼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장마다 해야 할 생각을 하면서 납득하는 것, 독서 지문 공부의 기본입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4.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영원주의자 / ㉡ 현재주의자 중에 다수 / ㉢ 조건부 결정론자

- '시간여행'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보였던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과 ㉡은 모두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본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재주의자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설]** '영원주의자'의 입장에서 '미래'라고 부르는 단계는 퍼즐의 한 조각처럼 이미 정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현재주의자'들에게 '미래'는 결정은커녕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이겠죠.

② ㉠과 ㉡은 모두 시간여행에서 과거에 도착하는 순간 출발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원주의자는 시간이 다 이미 주어졌었다고 봤지.

**[해설]** 일단 '현재주의자 중 다수'는 애초에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시간여행'의 상황을 가정하는 이 선지는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영원주의자'는 과거에 도착해도 출발지, 즉 '현재'라는 단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겠죠?

③ ㉠과 ㉣은 모두 과거로 출발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원주의자는 시간 퍼즐 찾아가면 되는 거고, 조건부 결정론자는 애초에 시간여행 가능하다는 사람들이지.

**[해설]** '영원주의자'는 시간 퍼즐의 여러 조각 중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시간여행이라고 봅니다. (2문단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명시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영원주의자'의 주장이 애초에 '시간의 각 단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단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간여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볼 것임을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건부 결정론자'는 애초에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④ ㉠과 달리 ㉣은 시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제가 의미 없으면 영원주의자지.

**[해설]** 지문 속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찾으면, 시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영원주의자'입니다. (1문단 여덟 번째 문장) 따라서 '3차원주의자'인 ㉠과 ㉡은 시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죠.

물론, 이런 명시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으로부터 당연히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⑤ ㉢과 달리 ㉡은 시간여행에 필요한 도착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착지 비존재' 때문에 시간여행이 안 된다는 게 '현재주의자 중 다수'가 하는 주장의 출발점이었지.

**[해설]** '조건부 결정론자'들은 시간여행에 필요한 도착지가 존재하

다고 봅니다. 원래 '과거'였던 것이 '현재'가 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과 달리 '부터가' 틀린 선지가 되네요.

그렇다면 '현재주의자 중 다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애초에 이들의 주장이 시작하는 지점은 '도착지 비존재'였습니다. '과거'나 '미래' 같은 도착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에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도착지가 존재한다고 본다는 내용도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5. 밑줄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추론'을 묻고 있지만, 결국은 '내용일치' 문제일 것입니다. 이해하고 납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3차원주의자 중에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간여행 안 된다는 사람 많지.

**[해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시간으로 여긴다는 것은, '과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현재주의자 중 다수'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가볍게 맞는 선지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② 현재주의자는 누군가의 외모가 변한 것을 보면 이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재주의자는 시간 흐름 있다고 할 거고... 그럼 외모 변한 건 시간 흐름 때문이겠지.

**[해설]** '현재주의자'는 '3차원주의자'의 부분집합이었습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이들은 누군가의 외모가 변한 모습을 보면 시간이 흐른 것이라고 보겠네요.

③ 4차원주의자는 도래하지 않은 시간으로부터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4차원주의자가 시간의 흐름 이야기를 왜 해.

**[해설]** '4차원주의자'는 '영원주의자'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역시 핵심적인 주장을 정답 선지로 구성하는 모습이에요!

④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3차원주의자는 출발지 미결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조건부 결정론자 이야기네.

**[해설]**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3차원주의자'는 곧 '조건부 결정론자'입니다. 이들은 '출발지 미결정의 문제를 '조건부 결정론'으로 해소하면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해소되어 시간여행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현재주의자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이겠지만요.

⑤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3차원주의자는 우리가 미래에 도착하는 순간 도착지가 생겨난다는 주장에 대해, 그 경우에도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재주의자의 주장이네.

**[해설]**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3차원주의자는 '현재주의자의 자임을 새겨 문제 2번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미래에 도착하는 순간 '미래가 '현재'가 되는 방식으로 도착지가 생겨난다면, 원래 '현재'였던 출발지가 '과거'가 되기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예요. 이는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보기>에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기>는 그 사례의 내용을 지문에 제시된 개념과 대응시키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해봅시다.

**<보 기>**

밴드 결성 전, 존 레논은 자신이 유명한 가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진 레논은 마침 타임머신 실험 소식을 듣고 10년 후의 미래로 가고자 자원하였다. 10년 후, 그의 밴드는 유명해지고 데뷔 이전 머리가 짧았던 그는 긴 머리를 가지게 된다. 만일 10년 후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미래를 방문한 무명의 레논은 장발의 록 스타인 자신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것은 서로 구별될 수 없다.'라는 원리에 위배된다. 즉 '동일한 사람이 무명이면서 동시에 스타이다.'라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레논은 10년 후로 시간여행을 할 수 없다.

- 시간여행을 하는 '존 레논'의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동일한 것은 서로 구별될 수 없다.'라는 원리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즉, '존 레논'이라는 동일한 사람은 구별될 수 없어야 하는데, '머리 길이'와 '유명도'라는 부분으로 구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는 2022학년도 예시문학 '이원론&동일론' 지문에서 등장했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말하죠? 이 정도는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원리에 위배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에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근거 중 새로운 것으로 제시된 모습이네요. 지문의 내용과 완전히 대응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보기>였습니다. 선지 판단 해볼까요?

- ① 시간여행의 도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른 경우, ㉠에 위배되는 사건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간여행을 안 하면 저런 원리를 어길 일도 없겠지.

**[해설]** 시간여행의 도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재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애초에 시간여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 위배되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을 위배하려면 일단 시간여행을 해야 하니까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② 레논의 서로 다른 단계 중에 현재 단계가 뒤의 단계를 방문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영원주의자에게 ㉡는 문제가 되지 않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단계끼리 움직이는 거면 문제 없지.

**[해설]** '영원주의자'의 주장은 각 시간이 특정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단계들끼리 방문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를 위배한다는 모순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저 존 레논이 10년 후라는 '단계'의 자신을 만나러 간 것일 뿐이니까요. 다시 말해, 두 대상이 '동일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③ 조건부 결정론자의 논리에 따른 경우, 레논이 미래에 도착하면 자신의 10년 후 모습을 직접 보기 이전이라도 도착 순간에 이미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해소되었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조건부 결정론자의 논리에 따르면 출발지 비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지.

**[해설]** 조건부 결정론자의 논리에 따르면, 레논이 미래에 도착하는 그 순간 출발지였던 현재는 '과거'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레논이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든 안 보든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해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현재주의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요.

- ④ 미래에 도착하는 시점의 레논과 미래에 있던 레논이 동일한 외모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주의자는 ㉢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명도가 다른데?

**[해설]** 일단 '현재주의자'는 이러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쳐도 '외모'가 같은 것만으로는 ㉢를 지킬 수 없다고 봐야겠죠. <보기> 정리를 통해서 현재의 레논과 미래의 레논은 '머리 길이'와 '유명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파악했으니까요. 외모가 같아져도 '유명도'에서 여전히 동일한 레논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주의자든 누구든 ㉢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⑤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은 제3의 관찰자가 볼 때는 동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시간 흐름에서는 동시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현재주의자 중에는 ㉣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동시가 아니라면 각자의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동일한 대상'이 아니니까 모순이 해소될 수 있겠네.

**[해설]**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각자의 시간 흐름'에서는 동시가 아니라면, 애초에 두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현재주의자'의 관점에서는 '현재'만이 존재하므로, '시간여행을 하는 레논의 현재'와 '타임스타가 된 레논의 현재'라는 두 가지 시간 흐름이 존재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동일한 대상'을 가정하는 ㉣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 해소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주차 [7~10]**

2018LEET [26~29] 사회(경제) '기업 이론' ☆☆☆☆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선택에서 출발하여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은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주류의 위치를 지켜 왔다. 신고전파 기업 이론은 이 방법론에 기초하여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주어진 생산 비용과 기술, 수요 조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여** 기업의 행동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한 사람의 농부의 행동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행동을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 이에 대해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이론이 제시되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식된 정의'로 제시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 정의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때의 '합리성'이란 곧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도 잡아낼 수 있겠죠? 다양한 개념의 정의가 수식되어 온 근슬쩍 제시될 때,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평가원에서도 자주 활용하는 정의 제시 방법이니깐요.

아무튼,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장 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 중에서도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즉 '합리적인' 생산량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여 기업의 행동 및 결과를 분석하는 거죠. 이처럼 이 지문의 화제는 단순히 '경제학'이 아니라 '기업 이론'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분석은 한 사람의 '농부'의 행동과 '기업'의 행동을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즉,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합리성'이라는 틀 안에서만 설명을 시도했다는 것이겠죠. '농부'라는 말이 '기업'이라는 말과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지했다면, '농부'와 '기업'의 행동을 동일하게 다루는 게 왜 문제인지 충분히 생각해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지문에 쓰인 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을 바탕으로 지문의 흐름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이해력'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즉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이론'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각 이론들은 어떻게 '기업의 특수성'을 설명했을까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그런데 이런 분석은 한 사람의 농부의 행동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행동을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

문장의 뉘앙스를 통해 '농부'의 행동과 '기업'의 행동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문제임을 파악하고, 그 문제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발생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국어를 못하는 사람에겐 너무나 어려운 생각이지만, 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겐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예요. 이러한 생각이 당연해질 때까지, 각 문장도 대체 왜 나온 것인지 그 '역할'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코즈**는 가격에 기초하여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시스템과 권위에 기초하여 계획과 명령이 이루어지는 **기업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활동이 시장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어떤 부품을 직접 만들어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매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자. 생산 비용 개념만 고려하는 **신고전파 기업 이론**에 따르면, 분업에 따른 전문화나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때 자체 생산보다 외부 구매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산 비용이 아닌 **거래 비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코즈의 논리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문장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고의 한계를 넓혀 가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하이라이트 문장\***

이 때문에 그는 모든 활동이 시장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이 필요한 이유’라는 진짜 화제를 정확히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정보이니,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코즈’의 기업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가격’에 기초한 ‘시장 시스템’과 ‘권위’에 기초한 ‘기업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앞 문단에서 ‘농부’와 ‘기업’이 다르다고 한 것에 대한 재진술이네요. 계속해서 ‘기업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고, 코즈가 제시한 그 특수성은 ‘권위에 기초한 시스템’입니다.

코즈는 **거래 비용**을 시장 거래에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탐색하거나, 서로 가격을 흥정하거나, 교환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하여 계약을 맺거나,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그 내용으로 들었다. **거래 비용이 너무 커서** 분업에 따른 이득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자체 조달**한다. 다시 말해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의 권위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코즈가 제시한 거래 비용 개념은 시장 시스템으로만 경제 현상을 이해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코즈의 설명은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주류적인 경제학 방법론도 ‘권위’와 같은 개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코즈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기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장에 따르면, 어차피 모든 의사결정은 가격에 기초한 ‘합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권위’를 가진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게 코즈의 물음인 거죠. 여기서 **확실하게 카테고리**가 잡혀야 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코즈의 주장이 담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코즈가 이야기한 ‘거래 비용’은 말 그대로 ‘거래/비용’입니다. 거래에 드는 비용, 즉 ‘어려움’이죠. <> 표시한 부분을 보면 마치 예시처럼 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탐색’, ‘흥정’, ‘협상 및 합의’, ‘확인 및 강제’ 등은 모두 거래를 위해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이니깐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기업이 필요한 이유)와 일대일로 대응시켜 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어떤 부품을 ‘직접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구매’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생산 비용’만을 고려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따르면, 자체 생산(직접 조달)보다 ‘외부 구매’가 더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전파 경제학’의 또 다른 정의가 수식되어 제시되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선택 가정’이라는 정의 외에, ‘생산 비용만 고려’라는 새로운 정의가 추가된 거죠. 아무튼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외부 구매’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접 생산도 하는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이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이유’라는 원리가 훨씬 명확하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러게요. 정말 이렇다면 기업은 왜 필요한 걸까요?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거래 비용’이 ‘기업이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것입니다. 코즈의 주장에 따르면, ‘거래 비용’이 ‘분업에 따른 이득’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큰 경우에는 기업이 ‘자체 조달’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결국, ‘거래 비용’이 너무나 큰 경우에 ‘자체 조달’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화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건 ‘기업이 필요한 이유’였으니까요.

코즈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목하는 ‘생산 비용’이 아닌 ‘거래 비용’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 비용’은 도대체 무엇이고, ‘거래 비용’에 따르면 기업은 왜 존재해야 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화제의 흐름을 잡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코즈의 설명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나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권위’ 개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생각 심화\***  
‘신고전파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왜 ‘자체 생산’보다 ‘외부 구매’가 더 합리적일까요? 새롭게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신고전파 경제학’은 ‘생산 비용’만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생산’보다 ‘외부 구매’가 더 적은 생산 비용이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므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외부 구매’를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끼 문제 해설\***  
**Q1.** 3문단에서 ‘코즈’가 말한 ‘권위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당 문장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의 권

위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라는 표지를 통해 앞 문장의 재진술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 문장에서는 기업에서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다면 외부 구매 대신 ‘자체 조달’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권위에 의한 조정’은 ‘거래 비용’과 ‘분업에 따른 이득’(외부 구매에 따른 이득)을 비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문 내의 논리로만 따지면, 결국 코즈가 이야기하는 ‘권위’ 역시 또다른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격이 결정하는 게 아닌, 기업 내의 여러 사람들이 ‘거래 비용’과 ‘분업에 따른 이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권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재진술을 이용하는 태도가 잡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새끼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처럼 대놓고 표지가 제시된 재진술은 놓치면 안 되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거래 비용이 너무 커서 분업에 따른 이득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는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자체 조달한다.

앞에서부터 계속 던지던 ‘기업이 필요한 이유’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화제’에 주목하여 읽는 태도가 잡혀 있었다면, 이 문장에서 ‘그러구나~’가 나왔을 겁니다.

윌리엄슨은 거래 비용 개념에 입각한 기업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했다. 먼저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기회주의’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으로 대체했다. <경제 주체들은 교활하게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지만, 정보의 양이나 정보 처리 능력 등의 이유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즈가 시장 거래라고 뚱그려 생각한 것을 윌리엄슨은 현물거래와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계약의 불완전성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계약은 현물거래와 달리 거래의 합의와 이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비책을 계산할 수도 없으며, 언어는 원래 모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 정도를 제삼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에는 빈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 사람은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와 수용할 수 있는 ‘권위’ 개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윌리엄슨은 코즈와 마찬가지로 ‘거래 비용’ 개념에 입각한 기업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기회주의’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으로 대체합니다.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코즈’ 모두 강조하던 내용인데, 윌리엄슨은 이를 ‘기회주의’, ‘제한적 합리성’으로 나눈 거죠. 다음 문장의 ‘교활하게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는 건 ‘기회주의’의 정의로, ‘정보의 양이나 정보 처리 능력 등의 이유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제한적 합리성’의 정의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기회주의’, ‘제한적/합리성’ 등으로 어휘의 의미를 살리면 그 정의를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또한 윌리엄슨은 시장 거래를 ‘현물거래’와 ‘계약’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계약’에 잘 적용되는데, 사람들이 가진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고 언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계약에는 ‘빈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 번 재진술하면서 강조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은 제한적 합리성과 언어의 모호성 때문에 불완전하다!’

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윌리엄슨의 주장이 결국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인간은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기 때문에 ‘빈구석’이 있는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그 빈구석을 최대한 메우기 위해 ‘거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애초에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외부 구매’가 곧 ‘계약’에 해당함을 알아차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코즈의 기업 이론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기대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행했던 준비, 즉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윌리엄슨은 계약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질수록, 즉 관계특수성이 클수록 계약 후에 상대방이 변화된 상황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관계특수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윌리엄슨은 이를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 문제’라고 부르고,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의 단순한 계약을 통해서 사전에 이 문제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과는 다른 복잡한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에 자체 조달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계속해서 윌리엄슨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계약의 빈구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해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관계/특수적/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관계 때문에 특수적으로 투자하는 것’ 정도로 의미를 잡은 뒤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행했던 준비’라는 정의와 붙여 납득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관계’ 때문에 ‘특수적’으로 신뢰하여 시간을 ‘투자’ 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를 납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납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봅시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위해 그동안 준비(투자)한 것이 무의미해지니까요. 이 때문에 윌리엄슨은 계약 이후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계약 성립을 위해 준비하던, 즉 서로 윈-윈하려던 관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의심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만약 투자한 게 많다면, 즉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잃을 게 많다면 애초에 그 계약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것을 윌리엄슨은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 문제’라고 부릅니다. 코즈의

주장과 섞어서 생각해보면,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아예 '관계특수적 투자'라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거래 비용=관계특수적 투자'를 잡아냈다면 정말 훌륭하겠어요.

윌리엄슨은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즉 '관계특수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된 '복잡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 이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자체 조달'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윌리엄슨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코즈가 설명하지 못했던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약에서의 거래 비용, 즉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를 지키는 게 어려울수록 계약이 복잡해지다가 결국 자체 조달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계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윌리엄슨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끼 문제 해설\***

**Q2.** '코즈'와 '윌리엄슨'의 주장을 '공통점/차이점'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자.

'코즈'와 '윌리엄슨'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거래 비용' 개념에 입각한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슨은 '계약에서의 거래 비용'을 '관계특수적 투자'라는 말로 구체화시켰을 뿐,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나아가 '거래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기업이 결국 '자체 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윌리엄슨'은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코즈는 비교적 단순하게 '거래 비용'이 '본업에 따른 이득'을 능가하는 경우에 기업이 자체 조달한다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윌리엄슨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한 '관계특수적 투자'라는 '거래 비용'이 초래하는 우려가 클수록 자체 조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나아가 윌리엄슨 '복잡한 계약'이라는 새로운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훨씬 자세하게 '거래 비용'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비교/대조의 기본은 '공통점/차이점'의 파악입니다. 이 비교 포인트를 첨예하게 잡아낼수록 지문을 훨씬 잘 장악할 수 있을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행했던 준비, 즉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그것을 토대로 정의를 이해하는 것. 독해의 기본입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습관화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본다면 안전장치가 필요 없는 거래만 존재하는 상황이 **신고전파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이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자체 생산만 대안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코즈**가 상정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슨의 기업 이론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거둔 성과 덕분에 거래 비용 경제학이 서서히 경제학 방법론의 주류적 위치를 넘볼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전장치', 즉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할 일이 없는 상황이 바로 '신고전파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라고 합니다.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라면, 굳이 자체 조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냥 외부 구매를 하면 되니까요.

한편 다양한 안전장치, 즉 '복잡한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 생산'만 대안으로 존재하는 상황은 '코즈'가 상정하는 세계겠네요. 코즈는 거래 비용이 조금만 커지면 바로 자체 생산을 할 것이라는 다소 과격한 이론이었으니까요. 새끼 문제 2번에서 설명했듯이, 윌리엄슨은 여기에 '복잡한 계약'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충 흐름만 잡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문장들 간의 관계를 통해 완벽하게 장악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지문이었습니다. 여러 번 복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7. ㉠이 신고전파 기업 이론의 비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코즈

- 코즈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의문은, '그래서 기업이 왜 존재해야 하는데?'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기업이 왜 자체 생산을 하지?'였죠. 이 말을 찾으러 가봅시다.

① 누가 기업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의사 결정 담당자는 뭘 상관이야.  
**[해설]** 의사 결정 담당자는 우리가 생각한 코즈의 의문과 아무런 상관도 없죠.

② 분석해야 할 기업의 행동에는 생산량의 선택밖에 없는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산량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었지.  
**[해설]** 코즈가 가진 의문의 포인트는 '생산량의 선택'의 방법 중 하나인 '자체 조달'이 왜 일어나느냐였습니다. '생산량의 선택' 이외의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③ 기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헛소리네.

**[해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 코즈, 윌리엄슨 모두 '합리성', 즉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론을 펼쳤어요.

④ 왜 어떤 활동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어떤 활동은 외부에서 일어나는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부/외부. 찾던 내용이네.

**[해설]** 기업 외부에서 일어나는 '외부 구매' 외에,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체 조달'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가 코즈의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한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가볍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⑤ 다수가 참여하는 기업과 한 사람의 생산자 사이에 생산량의 차이는 없는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산량의 차이가 뭐 상관이야.

**[해설]** 코즈는 '생산량의 차이' 같은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8. ㉠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거래 비용

- 코즈와 윌리엄슨의 주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① 거래량과 반비례 관계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거래량이 많으면 거래 비용은 더 커질 거지.

**[해설]** 애초에 '거래 비용'의 정의는 '시장 거래에 수반되는 어려움'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면,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도 당연히 많아야겠죠. 지문에 없는 말이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수능에 나오기는 어려운 선지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현물거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물거래도 거래데?

**[해설]** 현물거래도 어쨌든 '거래'입니다. 거래의 합의와 이행 사이의 시간 간격이 없어 계약보다는 적게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현물거래에서도 상대방의 '탐색' 및 가격 '홍정' 등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죠.

③ 계약 제도의 발달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계약 제도가 발달하면 제한적 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겠지.

**[해설]** 계약 제도가 발달하면,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 경우 '이행 확인', '강제' 등의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수능 수준을 아주 살짝 넘는 선지이지만, '거래 비용'의 정의를 생각하면 충분히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기업 내부에서 권위의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업 내부에서 권위 행사하면 '자체 조달'하는 건데, 이걸 '거래 비용'이 너무 클 때 하는 거지.

**[해설]** 기업 내부에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건, '거래 비용'과 '분업'에 따른 '이득'을 비교하여 기업 내부에서 '자체 조달'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 비용을 따져보니 그 비용이 너무 커서 내부에서 알아서 하기로 한 것일 뿐, 추가적으로 '거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도 개념의 정의만 잘 잡았다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⑤ 거래되는 재화의 시장 가치가 확실할수록 더 커진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장 가치가 확실하면 비용을 왜 지불 하나.

**[해설]** '거래 비용'에는 가격과 교환 조건을 '홍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시장 가치가 확실하다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겠죠. 홍정할 필요 없이 그 가치대로 지불하면 되니까요. 이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작아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9. 윌리엄슨의 기업 이론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코즈'와 비교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해봅시다.

① 권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고보니 권위 이야기는 안 나왔었네.

**[해설]** 코즈의 이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 가능한 '권위' 개념이었죠. 여기서 윌리엄슨은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는 잘 설명했지만, 수용 가능한 '권위'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권위'란 쉽게 말해 '기업의 의사결정'입니다. 윌리엄슨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업이 '권위'를 이용하는지는 설명했지만,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천을 통해 수용 가능한 개념으로 만들지는 못했죠. 수능 수준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을 이해하는 정도로 처리하도록 합시다.

② 경제 주체의 합리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정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회주의'와 '제한적 합리성'으로 대체했지.

**[해설]** 코즈의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윌리엄슨은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기회주의'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가정으로 대체했습니다. 핵심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쉽게 지을 수 있겠죠?

③ 현물거래와 자체 생산 이외에도 다양한 계약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단순한 계약, 복잡한 계약!

**[해설]** 윌리엄슨은 현물거래나 자체 생산 이외에도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에 따라 안전장치를 걸고 성립하는 다양한 계약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코즈와의 큰 차이점이었으니, 확실하게 인식했어야겠죠?

④ 관계특수성이나 계약의 불완전성이 큰 거래일수록 거래 비용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관계특수성, 계약의 불완전성이 크다는 건 거래 비용이 크다는 건데?

**[해설]** '관계특수적 투자'는 '거래 비용'과 같은 말이었고, 이는 '계약의 불완전성'이 클수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8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⑤ 시장 거래를 현물거래와 계약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거래 비용의 속성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윌리엄슨의 주장 그 자체네.

**[해설]** 시장 거래를 현물거래와 계약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측면(관계특수적 투자)에서 거래 비용의 속성을 이해하게 해주었다는 건 윌리엄슨의 주장 그 자체죠.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 <보기>가 지나치게 길어 공포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킬러 문제 출제를 지양하는 평가원의 경향에 맞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겁먹지 말고, <보기> 정리부터 차분하게 해봅시다.

— <보 기> —

화력 발전소의 설비는 특정 종류의 석탄에 맞춰 설계되며, 여러 종류의 석탄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건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한편 탄전(炭田) 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한 전력 회사는 송전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 근처에 발전소를 세운 전력 회사는 석탄 운반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화력 발전 전력 회사들의 석탄 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이다.

- 제시된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력 발전소의 설비가 특정 종류의 석탄에 맞춰 설계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종류의 석탄을 쓰고 싶다면, 당연히게도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석탄 근처에 발전소를 지었으면 송전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전기를 쓰는 사람들도 근처에 발전소를 지었으면 석탄 운반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거래', 즉 '계약'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네요. 서로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㉑ 미국 화력 발전에 쓰인 석탄 가운데 15% 정도는 전력 회사가 자체 조달한 것이었다.

- 물론 모든 기업이 '계약'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특수적 투자'라는 거래 비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15%는 '관계특수적 투자'라는 거래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권위를 통해 '자체 조달'을 선택한 모습이에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㉒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은 10%에 못 미쳤고, 1년 이상의 계약 건수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83%였고, 21년 이상의 계약도 34%였다.

- '초단기 계약'과 '장기 계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윌리엄슨에 따르면, 각 기업은 '거래 비용'을 고려하여 '계약을 맺기로 할 때 '안전장치'를 포함합니다. 자신들의 투자한 관계특수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이때의 '장기 계약'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랜 시간 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㉑와 관련된 ㉒번 선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장기 계약'을 '안전장치'로 연결하는 것은 어느 수준의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보기>의 모든 정보는 지문과 연결된다는 중요한 교훈만 얻은 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㉓ 특정 탄광에 접한 곳에 발전소를 건설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체 조달 또는 복잡한 장기 계약을 통한 조달이었는데, 이 경우 평균 계약 기간은 35년, 최대 계약 기간은 50년이였다.

- 특정 탄광에 접한 곳에 발전소를 건설한 경우에는 많은 '송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체 조달' 또는 '복잡한 장기 계약'이었다고 해요. 이는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큰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확실하게 존재하니, 협상 등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많은 거래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겠죠.

㉔ ㉑에서 복잡한 장기 계약의 경우, 품질과 가격에 관한 조건은 매우 복잡하게 설정하면서도 최소 공급 물량은 단순하게 명시했다.

- 그런데 '복잡한 장기 계약'의 경우, 품질과 가격에 관한 조건은 '복잡'한데 최소 공급 물량은 '단순'하다고 합니다. '복잡'과 '단순'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이해하시면 됩니다. 품질과 가격에 관한 조건은 '거래 비용'이 크다고 인식한 것이고, 최소 공급 물량은 '거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인식한 것이죠. 한 계약 내에서도 '거래 비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보기> 정리가 쉽지만은 않았습시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만 했다면, 선지는 상당히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① ㉑는 탄광의 직접 경영에 따르는 문제보다 복잡한 장기 계약으로도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겠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체 조달은 복잡한 계약보다도 거래 비용이 커서 선택하는 거지.

**[해설]** ㉑는 '자체 조달'을 선택한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리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관계특수적 투자'라는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계약 자체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1번 선지의 내용은 이에 완벽히 부합하네요.

② ㉑에서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에 맺은 것이겠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 자체 조달하겠지.

**[해설]** 선지에서 묻는 것은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입니다. 윌리엄슨에 따르면, 이때는 그냥 계약 자체를 포기하고 '자체 조달'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은 어쨌든 '계'



약을 맺은 것이니, 거래 비용이 자체 조달을 할 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일 거예요. 윌리엄슨의 주장만 잘 체크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 ③ ㉔는 특정 탄광으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하고 행한 투자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특정 탄광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보장받고자 한 것이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정리한 내용 그대로네.  
**[해설]** ㉔에서 미리 정리한 그대로, 장기 계약은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위험성이 내재한, '거래 비용'이 정말 크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맺는 것이예요. 이 경우에는 계속적인 거래를 보장받는다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겠죠.

- ④ ㉔에서 품질과 가격의 계약 조건이 복잡한 것은, 공급되는 석탄의 품질과 가격에 관련된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삼자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기 때문이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제삼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거래 비용 높은 거니까, <보기> 정리한 내용 그대로네.  
**[해설]** 품질과 가격의 계약이 '복잡'한 이유는, '거래 비용'을 크게 인식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의 '거래 비용'에는 합의의 이행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데,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삼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행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도 어렵겠죠? 즉, '거래 비용'이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선지는 맞는 말이 되네요.

- ⑤ ㉔에서 최소 공급 물량의 계약 조건이 단순한 것은,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나 언어의 모호성에 따른 문제가 크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과 같은 제삼자에게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제삼자에게 입증하기 쉬우면 거래 비용 낮은 거니까, <보기> 정리한 그대로네.  
**[해설]** 4번 선지와 반대의 상황이죠? 최소 공급 물량의 조건이 '단순'한 것은 그에 대한 '거래 비용'을 낮게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제삼자에게 그 조건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이행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 즉 '거래 비용'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맞는 선지였네요.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비교/대조 : 차이점은 반드시 '공통점'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차이점'을 인식하는 건 당연하죠?

**1주차 [11~13]**

2016LEET [20~22] 사회(법) '국가배상 제도' ☆☆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정 작용을 한다. 이에 따라 국가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가배상 제도**는 국가 활동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이 제도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법원의 판결 곧 판례에 의해 도입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법률 또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법을 위반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 사회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가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를 '국가/배상/제도'라고 부르는데,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판례로 도입된 이래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했겠죠?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을 지정하여 국가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국가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의 법을 위반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해봤다고 모두 배상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불법적인 직무 집행'을 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을 때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개념의 정의는 천천히 체크하면서 납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분명히 뒷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국가배상'과 관련되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기대하며 읽어봅시다.

**\*생각 심화\***

프랑스의 경우, 국가배상 제도를 '법률'로 도입하지는 않고 그저 '판례'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배상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죠. 이렇게 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적힌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판례 혹은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인격 부인론' 지문에서도 출제되었던 요소예요.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①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38. 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인식할 경우 시간들을 아낄 수 있는 좋은 태도가 될 수 있으니 알아두도록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우리나라도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법을 위반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정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법관이 하는 **재판**도 국가 활동에 속하는 이상 재판에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에는 일반적인 행정 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특수성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파악, 법령의 해석,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잘못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법관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신껏 재판 업무에 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국가배상 제도'를 '재판'에 연결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국가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재판=국가 활동'이라는 건 당연하게 납득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일반적인 행정 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그 책임을 조금 제한해야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 배상을 무작정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된 '국가배상'을 피할 수 있는 재판의 특수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겠죠?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입니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관의 특성상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이상으로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법관이 배상을 안 할 수 있을 만한 판단만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지문의 화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 즉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 지문에서 '예외'가 중요하다라는 건 너무나 몇 번이고 강조한 내용이죠? 재판이 가진 '특수성'이 이러한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화제의 흐름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생각 심화\***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건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한되지 않는 상황', 즉 재판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배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해봅시다.

정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답은 바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여 재판한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하다는 것이죠. 첫 문단에서 '국가배상법'의 정의를 정확히 체크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재판의 특수성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법관이 법을 위반하면 배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 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그러나 재판에는 일반적인 행정 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판'이라는 내용으로 화제가 구체화되었다는 점, '특수성'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제시되었다는 점, '재판'이 결국 '예외'라는 점 등을 모두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가볍게 해낼 수 있어야 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도 재판의 특수성의 하나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최상급 법원의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이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이는 부단히 반복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일정 시점에서 사법권의 공적 권위로써 확정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일단 기판력이 생긴 확정 판결을 다시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이 가진 또다른 특수성으로 '기판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6 학년도 수능에서도 만나 본 개념이니, 그 정의를 납득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이러한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듯이, 법적 분쟁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만약 기판력이 생긴 확정 판결에 국가배상 청구를 허용한다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법적 질서가 또 흔들리게 되겠죠.

계속해서 '국가배상 제도'에서의 '예외'인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 지문의 핵심은 결국 '예외'라는 것! 잊지 않았죠?

재판에는 **심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심급 제도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송 당사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불복 절차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원의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여 하급심의 잘못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다. **심급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시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심급 제도가 무력화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또 다른 '특수성'으로 '심급 제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심급 제도'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 믿어요. 아무튼, 소송 당사자는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불복 절차'에 따라 재판의 결과를 시정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급 제도와 다른 방식, 즉 '국가배상' 같은 방식으로 재판의 결과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인정해버리면, 기판력에 대한 설명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니까요! '재판의 특수성'이라는 '예외'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새끼 문제 해설\***

**Q1.** 이 지문에서 다루어지는 '기판력'과 '심급 제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범 답안 :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재판의 특수성

이 지문에서 '기판력'과 '심급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특수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제시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맨 처음 제시된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도 공통된 요소예요. 그런데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기판력/심급 제도'가 구분되는 부분은 바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둘 모두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열되는 대상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주는 것은, 체감되는 정보량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자연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심급 제도가 무력화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지문이 조금만 더 어려워진다면 없어질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심급 제도' 역시 '법적 안정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속한 정보라는 걸 인식해야 해요. 어렵지 않죠?

독일에서는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형사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에는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적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갑자기 '독일'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재판에 적용되지 못하는 국가배상 책임'이라는 화제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독일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독일의 법'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거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선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법에 안 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 지문의 대전제가 깨지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다. 먼저, 대법원은 비록 확정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소를 제기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같이 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가 이에 해당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한다. <따라서 법관이 직무상 독립에 따라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이후에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법관'이 진짜 잘못된 경우에만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거죠.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건 '국가배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뇌물', '직무 수행 관련 법적 기준 위반' 등이 그 예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2문단의 생각 심화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결국 '법관이 법을 위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는 배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 '국가배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집중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지문은 결국 '국가배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문장,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 즉 이 지문의 화제는 이 내용이니깐요!

그리고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에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국가배상 제도'보다 먼저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여기서의 '불복 절차'가 위에서 나온 '심급 제도'와 사실상 같은 말인 것은 쉽게 체크하고 있겠죠? 개념의 정의, 그리고 그 역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능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관 때문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네요. 역시 당연한 이야기죠? '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법 지문의 전형인 '예외 활용'을 잘 보여 주는 지문입니다. '국가배상 제도'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 '재판'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서는 '재판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라는 원칙 속에서 '법관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예외'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 지문에서는 '예외'를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원칙적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정확히 따지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따라서 법관이 직무상 독립에 따라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이후에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읽으면서도, 결국 이 지문의 화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니깐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

- 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배상 제도가 법률로 도입되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프랑스는 판례로만!  
**[해설]** 프랑스는 국가배상 제도를 판례로만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언제든지 선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 미리 체크하도록 합니다.

- ② 최하위 등급의 법원이 한 판결도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 어겼으면 배상할 수 있지.  
**[해설]**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은 마지막 문단에서 열심히 체크한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그 예외는 바로 '법관의 잘못'이 있을 때였어요! 그럼 최하위 등급의 법원이 한 판결이라도 법관이 뇌물을 받거나 하는 등의 잘못을 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예외'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선지였습니다.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해요!

- ③ 사실관계 파악은 법관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관계 파악이 왜 법관의 직무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데.  
**[해설]** '사실관계'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온 개념이에요. 법관의 직무가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되겠죠.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냥 답으로 골라버리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 ④ 독일은 판례를 통해서만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독일은 법으로 도입했다고 했지.  
**[해설]** '독일'은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즉 법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가져 온 비교 포인트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 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우리나라는 법에 명시 안 되어 있다고 했지.  
**[해설]** 계속해서 '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우리 대법원'은 여러 방법을 통해 재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마지막 문단에서 계속 설명했었죠?

12. ㉠의 입장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우리 대법원

-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어겼을 때'만 배상할 수 있다! 이 대원칙 하나를 잡아 둔 상태로 문제 풀어봅시다.

- ① 국가배상 청구가 심급 제도를 대체하는 불복 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심급 제도 같은 게 있으니 국가배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  
**[해설]** 재판에는 '심급 제도'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국가배상 제도'가 제한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 제도'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지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던 내용이었네요.

- ②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적 절차 안 거쳤으면 배상 못 해준다고 했지.  
**[해설]** 심급 제도와 같은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가가 '국가배상 제도'를 통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또한 '심급 제도'는 '기판력'과 함께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라는 건 '배상받을 권리'를 의미할 텐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권리는 희생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배상이 불가능하니깐요! 다양한 정보의 정의와 역할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이런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 ③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 어겼으면 배상해야지.  
**[해설]** 우리가 열심히 체크한 '예외'를 무시하는 선지네요.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이라도 '법관의 법 어감'이라는 예외 상황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④ 법관이 법을 어기면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인정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 어겼으면 배상해야지.  
**[해설]** 계속해서 '법관이 법을 어기며 재판한 경우'라는 예외 상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가볍게 지울 수 있는 선지죠?

- 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판결에 나타난 법관의 법령 해석이 상급 법원의 해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심급 제도'라는, 재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지네요.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3. <보기>의 사례에 대한 아래의 판단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④

- 법 지문에서 <보기>에 사례가 제시되면, 지문에 나온 개념을 <보기>에 대응시키며 정리해야만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 <보 기> —

A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A는 적법한 청구 기간 내인 1994년 11월 4일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에 적힌 접수 일자를 같은 달 14일로 오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A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위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 A는 법을 위반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1997년에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고, 2003년에 이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 천천히 정리해봅시다. 먼저 A의 청구에 대한 1994년의 판결은 명백한 법관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자를 착각했다는 것은 '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즉, 국가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배상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1997년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고, 2003년에 이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당연히 '국가배상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이 내용 잡고 선지 판단 해봅시다.

ㄱ. 법관의 직무상 독립 보장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 어겼으면 배상해야지.  
**[해설]** 법을 어겨 판결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내용 그대로네요.

ㄴ. 법원은 A의 심판 청구서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관이 착각한 거니까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  
**[해설]** 위와 똑같은 선지죠? 재판관들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A의 심판 청구서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판단할 거예요.

ㄷ. 1997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의 국가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불복 절차 없어서 못한 거니까, 나중에라도 국가배상 해 줘야지.

**[해설]** 1997년에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A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고, 이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니까요.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남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예외 인식 : 특히 법 지문에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예외'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1주차 [14~16]**

2012LEET [18~20] 사회(경제)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

☆☆☆☆☆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명제로 표현되는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은 완전 자본 시장 가정, 곧 자본 시장에 불완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마찰 요인이 전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 자본 구조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이 없고 거래 비용이 없으며 모든 기업이 완전히 동일한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기업의 가치는 기업 내부 여유 자금이나 주식 같은 자기 자본을 활용하든지 부채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든지 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론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현대 자본 구조 이론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이 정의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 수식되어 제시된 이 정의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주셔야겠죠? 첫 문장부터 제시된 개념이라면 지문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개념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개념의 핵심은 '자본/구조'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이론은 '완전 자본 시장 가정'에 기초한 이론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자본 시장에 불완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는, '완전/자본/시장/가정'이네요. 단어의 의미는 숨쉬듯이 살려주고 있죠?

자본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성'이라는 게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 '세금', '거래 비용', '위험'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입되는 순간 자본 시장이 '불완전'해진다고 보는 것이네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자본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자기 자본' 및 '타인 자본' 중 어떤 것을 얼마나 활용하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자본'의 예시가 '내부/여유/자금' 및 '주식'이라는 점, '타인/자본'의 예시가 '부채(빚)'라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는 태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본' 및 '타인 자본'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자본 구조'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첫 문장에서 수식된 정의로 제시했던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의 정의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두고 있었다면 이를 읽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자본 구조'라는 것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사용 비율(?)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 자본 시장 가정'에서는 이 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이론은 '완전 자본 시장 가정'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론은 아니라고 해요. 그저 '출발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론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자본 구조 이론'들이 소개되었겠죠? 어떤 것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

금이 없고 거래 비용이 없으며 모든 기업이 완전히 동일한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기업의 가치는 기업 내부 여유 자금이나 주식 같은 자기 자본을 활용하든지 부채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든지 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납득해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 자본', '타인 자본'으로부터 '자본 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까지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길어도 정말 긴데, 이 정도 호흡의 문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지구력도 필요했겠죠?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이 제시된 이후, 완전 자본 시장 가정의 비현실성에 주안점을 두어 세금, 기업의 파산에 따른 처리 비용(파산 비용), 경영자와 투자자, 채권자 같은 경제 주체들 사이의 정보량의 차이(정보 비대칭) 등을 감안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이 발전해 왔다.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이러한 이론들 중에는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금', '파산 비용', '정보 비대칭' 등 자본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고 있죠? 이러한 요인들이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한다는 것과 같은 말일 텐데, 이 속에서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의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자본 구조'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의 정의를 잊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일 겁니다.

**상충 이론**이란 부채의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편익으로는 법인세 감세 효과만을, 비용으로는 파산 비용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이론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법인세 감세 효과**란 부채에 대한 이자가 비용으로 처리됨으로써 얻게 되는 세금 이득을 가리킨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상충 이론은 <부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감세 효과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반면, 기대 파산 비용도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본다.> 이 상반된 효과를 계산하여 기업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부채 비율 곧 최적 부채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먼저 '상충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부채의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이라고 해요. 이 정의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먼저 '부채의 사용'은 곧 '타인 자본의 사용'을 가리키죠? 즉, '상충 이론'은 '타인 자본의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자본 구조'인지를 따지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겠죠? 이렇게 지문 속에 제시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기업의 가치'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부채 사용'의 편익으로는 '법인세 감세 효과'만을, 비용으로는 '파산 비용'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고 합니다. '법인세/감세/효과'라면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 감면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부채에 대한 이자가 비용 처리됨으로써 세금 '이득'을 보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법인세 감세 효과'가 어쨌든 '이득', 즉 '편익'임을 납득하시면 됩니다.

**\*생각 심화\***

물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는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죠?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ICT 산업' 관련 지문에서, '법인세'는 '수입-계반 비용'에 해당하는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이자'라는 걸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계반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윤'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겠죠. 해당 지문에서 제시된 '로열티'를 이용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이처럼 기출에 제시된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준 높은 독해의 지름길이 됩니다. 기출 분석을 통해 '지식의 확장'이라는 부분도 챙겨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가정할 경우, 부채의 사용이 증가하면 '법인세 감세 효과'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가치'라는 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 화제에 해당하는 정보예요. '법인세 감세 효과'는 '편익'이라고 했으니, 이 효과가 발휘되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채의 사용이 증가하면 '기대/파산/비용'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빛이 늘어나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파산할 때 지게 될 비용을 '파산 비용'이라고 한다면 '기대/파산/비용'이 증가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겠네요.

이처럼 부채의 사용을 조절함에 따라, 즉 '자본 구조'를 적절히 변화함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가장 크게 되는 '최적/부채/비율'이 도출되겠죠? '상충/이론'은 이렇게 '상충'되는 두 효과 속에서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새끼 문제 해설\***

**Q1.** 3문단 마지막 문장의 '최적 부채 비율'과 같은 말을 찾아 보자.

모범 답안 : 최적 자본 구조

어렵지 않죠? 계속 강조하지만, '부채'라는 말은 결국 '타인 자본'을 이용한 '자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읽으면 이 정도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이 상반된 효과를 계산하여 기업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부채 비율 곧 최적 부채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라는 이 지문의 화제를 한 번 더 인식시켜주면서, '최적 부채 비율=최적 자본 구조'라는 재진술을 통해 '상충 이론'을 완벽하게 정의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정보 비대칭의 정도가 작은 순서에 따라 자본 조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가 필요할 경우 내부 여유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며, 그 자금이 투자에 미달될 경우 외부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에도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주식의 발행보다 부채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본/조달/순서/이론'입니다.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나나 다를까,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자본 조달'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2문단에서 제시한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 관련 정보는 '세금(법인세)', '파산 비용', '정보 비대칭'이었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상충 이론'에서 다뤘으니, 이제는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다룰 차례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가 필요하면 '내부 여유 자금(자기 자본)' → 외부 자금(타인 자본) 순서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보 비대칭'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장 잘 알 테니, 일단 자신들이 가진 돈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외부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 자금, 즉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도 '주식의 발행'보다 '부채의 사용'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부채의 사용'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주식의 발행'에서보다 더 작다는 건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어!

**\*새끼 문제 해설\***

**Q2.**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서는 '부채의 사용'을 '주식의 발행'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를 '정보 비대칭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이때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모범 답안 :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진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의 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영진과 투자자가 인식하는 '기업의 가치'에 큰 차이가 생긴다. 이 경우 경영진은 자신의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투자자 때문에 주가를 저평가받을 수 있고,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경영진과 금융 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즉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채의 사용'을 선호하게 된다.

솔직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이 해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낸 문제입니다. 아예 답을 하지 못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깐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의 가치'를 떠올릴 수 있느냐였습니다. '정보 비대칭'과 관련하여 '자본 구조'를 조정하는 이야기 역시 결국 '기업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일 테니까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기업은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투자자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개된 정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것이고, 대단히 잘 해석해내는 경우에도 자세한 내부 사정 등등은 알 수 없으니까

요.) 자칫하면 실제 '기업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경우 원하는 만큼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구요. 경영진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 구조'를 바꾸는 일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 경영진은 금융 기관 혹은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경영진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의 정도를 어느 정도 줄여줄 것이고, '주식의 발행'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이처럼 '기업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는, 즉 '정보'를 훨씬 대칭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자본을 조달하고, 이것이 곧 '자본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문 내용만으로는 완벽하게 생각해내기 어렵긴 하지만, 이와 고난도 지문을 다루는 김에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핵심은 '기업의 가치'라는 화제를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핵심 포인트는 다른 쉬운 지문과 똑같았던 것이예요.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들의 부채 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론적 예측을 제공한다. 기업 규모와 관련하여 **상충 이론**은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대기업은 소규모 기업에 비해 사업 다각화의 정도가 높아 파산할 위험이 낮으므로 기대 파산 비용도 낮아서 부채 수용 능력이 높은 데다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부채를 차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결국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는 '부채 비율', 즉 '자본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나은 정보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론적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부채 비율'이라는 공통 범주를 가지고 비교/대조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업 규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각 이론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할까요? '상충 이론'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대기업의 경우 '기대 파산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충 이론'에서는 '부채의 증가'가 '기대 파산 비용 증가'라는 '비용'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 '기대 파산 비용'이 증가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법인세 감세 효과'라는 '편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문에 제시되었듯이, 대기업은 '부채 수용 능력'도 높으니까요. '상충 이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했다면, 이렇게 납득해 나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업 규모가 클 경우 기업 회계가 투명해지는 등 투자자들에게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금융 중개 기관을 이용하여 자본을 조달하기보다는 주식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채 비율이 오히려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들은 또 '정보 비대칭'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규모가 크면 '정보 비대

상충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칭'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적고, 이에 금융 중개 기관을 이용한 자본 조달, 즉 '부채 사용'보다는 '주식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부채 사용'보다 '주식 시장 사용'을 더 후순위로 하는데, 대기업의 경우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이용하여 '부채'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하여, **상충 이론**은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는 기대 파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성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지금까지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충 이론'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와 정확히 반대되는 거죠? '편익'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채를 적게 쓴다는 겁니다.

한편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네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테니, '정보 비대칭'을 따질 여력도 없이 일단 최대한 끌어모으는 이야기겠죠. 물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정보 비대칭'을 최대한 줄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식 발행'보다는 '부채 사용'을 선호할 것이고, 더 많은 투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부채를 필요로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겠습시다.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자본 구조 및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른 부채 비율(자본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불완전 자본 시장'에서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제를 끌고 오면서 읽는 태도가 잡혀 있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들의 부채 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론적 예측을 제공한다. 기업 규모와 관련하여 ~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의 비교 포인트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비교되는 개념들은 항상 그 '공통 범주'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채 비율'을 '자본 구조'로 재진술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자본 구조'를 설명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이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밀러는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을 수정·보완하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본 구조의 설명에 있어 파산 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감세 효과가 기업의 자본 구조 결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본 구조 결정에 세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현실에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소득세는 채권자의 자산 투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밀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수요 행태와 기업들의 공급 행태를 정형화하여 경제 전체의 최적 자본 구조 결정 이론을



제시하였다. 밀러의 이론에 의하면, 경제 전체의 자본 구조가 최적일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이자 소득세율이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 자본의 사용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 결국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 없고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이론들에게 공격받은 밀러는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을 수정·보완합니다. '완전 자본 시장'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이론을 보완했을까요?

먼저 '파산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밀러는 '자본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파산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또한 '법인세 감세 효과' 역시 '자본 구조' 결정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한지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추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밀러는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라는 세금 외에도 '소득세'라는 세금이 기업의 '자금 조달', 즉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데, 만약 이 세금이 너무나 크다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일 것이고, 이는 '타인 자본'을 통해 '자본 조달'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자 소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지요?

밀러는 이런 맥락에서 '경제 전체'의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법인세율'과 '이자 소득세율'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인데, 이렇게 되면 부채 사용으로 인한 편익(법인세 감세 효과)과 비용(이자 소득세로 인한 투자자들의 투자 기피)이 같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어차피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할 수 없다면, 애초에 '기업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자본 구조'도 없을 것입니다. ('최적 자본 구조'의 정의 잊지 않았죠?) 따라서 '자본 구조'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원래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납득하는 게 어렵지는 않죠?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세금'을 고려해도, '자본 구조'는 '기업의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FAQ\***

Q : 밀러는 분명히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 없다고 하는 건가요? 자기가 '법인세율=이자 소득세율'로 정리한 거 아닌가요?

A : 이런 디테일에 강해져야 합니다. 밀러가 결정한 '최적 자본 구조'는 '경제 전체'의 구조입니다. 애초에 '세율'이라는 것은 일개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한편 밀러가 결정될 수 없다고 하는 '최적 자본 구조'는 '기업 차원'의 것입니다. 즉, '경제 전체'가 '최적 자본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는, '기업 차원'에서 '부채'를 사용하든 말든 '편익'과 '비용'이 같아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부채를 아무리 조절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20학년도 수능 '바젤 협약' 관련 지문의 '시장 위험 / 신용 위험'처럼 비슷한 단어들의 디테일한 차이를 잡아 내는 것은 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주 중요한 독해 태도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결국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 없고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밀러'의 입장에서 이 지문의 화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해주는 문장입니다. '최적 자본 구조'라는 말,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다는 말이 모두 납득되어야 해요. 이 문장을 납득할 수 있어야,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① 경제 주체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만으로는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논할 수 없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서 했잖아.  
**[해설]**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논하려면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정보 비대칭'만을 고려하여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논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② 자본 구조 이론은 기업의 가치가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이겠지.  
**[해설]** '자본 구조 이론'은 '부채 비율' 같은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같은 변수들이 '부채 비율'과 같은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 '자본 구조'가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기업의 가치'를 바꾼다는 내용이죠. 물론 밀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요.

③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내부 여유 자금, 주식, 부채의 순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식 전에 부채를 쓴다고 하겠지.  
**[해설]** '정보 비대칭'이 작은 순대로 나열하면, '내부 여유 자금', '부채', '주식'입니다.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 따르면 이 순서대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겠죠.

④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 규모가 부채 비율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상반된 해석을 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개념들의 비교 포인트였지.  
**[해설]** '기업 규모'가 '부채 비율'에 미치는 효과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을 비교하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인식했다면 1초만에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겠네요.

⑤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은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이 가진 결론의 비현실성은 비판했지만 이론적 전제에는 동의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론적 전제가 비현실적인데?  
**[해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의 이론적 전제는 '완전 자본 시장 가정'입니다. 애초에 이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 같은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이 등장한 것이었어요. 비현실성은 비판하고 이론적 전제에는 동의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5. ㉠과 ㉡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 ㉠ 모딜리아니-밀러 이론
- ㉡ 밀러의 이론

- 두 이론 모두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다!' 이 공통점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① 파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 파산 비용을 반영하였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파산 비용은 무관하다며.  
**[해설]** 밀러는 초지일관 '파산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 애초에 ㉠에서는 '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했었고, 어느 정도 불완전성 요인을 고려하려 했던 ㉡에서도 '파산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으니 까요.

② 개별 기업을 분석 단위로 삼은 ㉠과 같은 입장에서 ㉡은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분석하였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밀러가 최적 자본 구조를 왜 분석하나.  
**[해설]** 애초에 ㉠과 ㉡ 모두에서 '개별 기업을 분석 단위로 삼지 않았고,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분석한다는 것도 '밀러'의 주장과 어긋나네요. 가법게 지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③ 기업의 가치 산정에 법인세만을 고려한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 법인세 외에 소득제도 고려하였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인세 의미 없다며.  
**[해설]** 애초에 ㉠에서는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 그럼 ㉡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겠네요.

④ 현실 설명력이 제한적이었던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 기업의 가치 산정에 타인 자본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타인 자본 영향 없다는 게 핵심인데?  
**[해설]** 밀러 주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등 '자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선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⑤ 자본 시장의 마찰 요인을 고려한 ㉡은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가 무관하다는 ㉠의 명제를 재확인하였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가 무관하다는

걸 두 번이나 이야기했지.

**[해설]** 4번 선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밀러'의 주장을 정확하게 건드려주는 선지입니다. '자본 시장의 마찰 요인'을 고려하든 안 하든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다는 게 핵심이예요.

16. 윗글에 따라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바르게 판단한 것은? ㉢

—<보 기>—

기업 평가 전문가 A씨는 상충 이론에 따라 B 기업의 재무 구조를 평가해 주려고 한다. B 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높으며 기업 규모가 작으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최근에 B 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생산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 <보기> 분석부터 해봅시다. B 기업의 재무 구조를 '상충 이론'에 따라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B 기업은 '타인 자본 비율', 즉 '부채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고, 기업 규모가 작은 대신 '성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상충 이론'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부채의 비율'이 낮아야 합니다. '기대 파산 비용'이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B 기업은 부채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니, A씨는 B 기업의 부채 비율을 줄일 것을 권할 것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선지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① A씨는 B 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규모 작으면 부채 비율 낮아야지.  
**[해설]** '상충 이론'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법인세 감세 효과'라는 '편익'보다 '기대 파산 비용'이라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선지네요.

② A씨는 B 기업의 이자 비용에 따른 법인세 감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인세 감세 효과가 왜 없어.  
**[해설]**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 '기대 파산 비용'이 더 클 뿐, '법인세 감세 효과'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죠? 부채를 사용하여 그 이자에 대한 감세 효과를 본다는 것 자체에는 예외가 없으니깐요.

③ A씨는 B 기업의 높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채 비율 높으면 기업 가치 떨어지지.  
**[해설]** 역시 이 지문의 화제를 건드리는 선지네요. B 기업의 높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은 곧 '자본 구조'를 의미하는데,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충 이론'의 핵심 주장이니까요. 특히 기업의 규모가 낮은 B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 기업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겠죠.

- ④ A씨는 B 기업이 기대 파산 비용은 낮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대 파산 비용이 왜 낮아. 수익 얘기는 또 언제 했고.

**[해설]** 사실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과 같은 내용을 해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충 이론'에서는 B 기업과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의 '기대 파산 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할 거예요. 또한 '기대 수익'에 대한 내용은 지문이나 <보기> 어디서도 확인하기 힘든 내용이니, 답으로 고르긴 어려워보입니다.

- ⑤ A씨는 B 기업의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자금은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할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채 비율 더 늘리면 안되겠지.

**[해설]** <보기> 정리에서 언급했듯이, A씨는 B 기업에게 '부채 비율'을 줄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 시설 확충 투자금을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라는 것은, '부채 비율'을 늘리라는 말이죠? <보기> 정리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네요.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들은 언제나 그 비교/대조를 시작하게 하는 '비교 포인트'를 가집니다. '공통 범주'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어떤 포인트를 바탕으로 비교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